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6권 제2호(2023. 8. 30)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Vol.16, No.2 August 2023 : pp. 85~118

<https://doi.org/10.35881/HLER.2023.16.2.4>

학교구성원의 교육활동(교권) 보호 인식 연구*

- I 광역시를 중심으로 -

정 소 민**

조 기 성***

《차 례》

- I. 서론
- II.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제언

《요 약》

본 연구는 I 광역시교육청 교원 1,951명, 학생 3,074명, 학부모 2,869명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집단 간 교권 개념 인식과 교원에 대한 정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관한 자유기술식 문항에 대한 응답을 Nvivo12를 사용하여 단어 빈도와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하고 학교구성원 집단별 시사점을 범주별로 도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과 결과에 주로 주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자유기술 문항 분석을 토대로 교육활동(교권) 보호를 둘러싼 학교구성원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교권 개념을 둘러싼 학교구성원의 인식 차이와 교원에 대한 정서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교육활동 침해 과정에서 전문성과 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교사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권침해'를 유발하는 전제적 조건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은 교육활동의 공정성, 교육적 전문성, 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의 내실화를 모색하여야 하고, 학생 및 학부모 역시 학교와 교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호 노력을 해야 함을 드러내며, 교원 집단 내부의 성찰적 계기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다양한 유형의 교육활동(교권) 침해 행위에 내재된 폭력성을 '민원'이라는

* 이 논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저자가 수행한 '학교구성원의 교육활동(교권) 보호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정소민 외, 2022)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 교육학박사

*** 교신저자,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사, 교육학박사

**** 논문투고일 : 2023.07.30. 게재심사일 : 2023.08.04.-2023.08.13. 게재확정일 : 2023.08.21.

이름으로 허용해 온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떠한 폭력도 허용하지 않는 학교 구성원의 성찰과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대한 사고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후환경의 변화는 환경생태계의 복원을 요구한 것처럼 교육생태계도 교육구성원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제어 : 교권, 학생 인권, 교육활동 보호, 학교 구성원, 폭력

I. 서론

교육활동(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나 수치심, 자책감(박경애·조현주, 2015),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권오형, 2010; 이규미·조은선, 2015), 수업에 대한 몰입의 저하(이규미·조은선, 2015), 교사로서의 정체성 위기(김희정·박은정·김현정, 2021) 등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교사의 ‘폭력’ 피해 후유증이 외상후 스트레스 반응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제시한 연구(박경애·조현주, 2010; 이규미·손강숙, 2013)와 교사의 ‘폭력 피해’ 경험을 외상 사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힌 연구(최유리·서영석, 2022)를 고려할 때, ‘교육활동(교권) 침해’로 불리는 현상의 본질은 폭력을 포함한다.

폭력의 개념은 “한 사회에서 통용되고 수용되는 가치체계와 문화, 그리고 그에 기초한 사회적, 법적, 정치적 코드”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윤이화, 2022: 131). 현재 한국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등의 용어는 폭력이 행사되는 공간적 개념에 기초하여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종합적인 강제력을 문제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와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반영한다. 일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 ‘강제적인 심부름’ 등을 모두 ‘폭력’이라고 정의할 뿐 아니라 학교폭력에 관한 법원의 판례에서 피해 학생이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단한 사실(박애리, 2021)은 결국 학생 간의 ‘폭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점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왜 교사가 경험하는 ‘교육활동(교권) 침해’ 경험에 대해서는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국외 연구에서는 ‘교사를 향한 폭력(violence toward teachers)’, ‘교사를 향한 공격(aggression toward teachers)’ 등과 같은 명시적인 용어를 키워드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편이다(Moon & McCluskey, 2022; Chen & Astor, 2008;

Wilson, Douglas, & Lyon, 2011). 그러나 한국 사회는 직접적으로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현상을 지칭하기 보다는 ‘교권’ 혹은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로 표현하는 사회문화적 경향에 대해 관심이 매우 적은 편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혹은 ‘교권 침해’ 대신 교사 대상 ‘폭력’을 주제로 사용한 일부 연구가 발견되지만(최유리·서영석, 2022; 이규미·조은선, 2015; 김희정 외, 2021; 이승연 외, 2022; 오대연·김경보, 2016; 조규영·김수희, 2019), 이들 연구에서는 ‘교육활동(교권) 침해’의 대체어로서 ‘폭력’을 사용했을 뿐 왜 그러한 현상을 ‘폭력’으로 호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교사의 ‘교육활동(교권) 침해’ 경험에 대해서 ‘폭력’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함으로써 ‘사회적 사실’(신진욱, 2004: 17)로서의 교원을 향한 폭력 행위를 제대로 포착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언어 사용과 그로 인한 현실 인식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신진욱(2004)의 논의에 빗대어 표현해 본다면, ‘교육활동(교권) 침해’와 같은 용어는 교원이 겪는 훼손과 손상을 추상화하고 ‘침해’를 한 가해자에게 집중함으로써 폭력을 피해자의 고통으로 정의하지 못한다. ‘교육활동(교권) 침해’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언어와 지식은 대부분 능동태로서의 가해 행위(일례로 “교단에 누워 핸드폰을 만졌다”, “교사 신체를 촬영했다”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피해자로서의 교사에 대한 기술은 단지 가시적이고 계량화된 상처(일례로 “학생, 학부모에 의한 모욕 및 명예훼손 침해 56%” 등)만을 언급할 뿐 피해자들이 폭력으로 인해 겪는 고통은 재현하지 않는다.

피해자로서의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2년에도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이라는 명칭으로 대응 방법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후 일명 경기도 이천에서는 ‘빛자루 사건’이라는 교사를 향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작년 충남 홍성에서 교단에 누워 여선생님을 촬영하는 사건을 계기로 2022년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이라는 대책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교권침해 발생원인’을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36.2%), 학교와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26.2%),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부족(17.5%)과 교육활동 보호 과제로 침해자 엄정한 조치 강화(36.9%), 전 사회적 인식 제고(23.8%), 침해 행위 대응 역할 강화(13.3%) 순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 인식을 제기해 본다. 첫째, 일련의 계속되는 교육활동(교권) 침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간격으로 정부의 대책 방안이 제시 되었지만 오히려 교육활동(교권)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 둘째, ‘학생인권 조례’ 도입과 ‘엄정한 조치 강화’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런 행위의 결과인 ‘교육 구성원의 인식’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교원, 학생, 학부모의 교권에 대한 인식, 교원에 대한 정

서 인식,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둘러싼 학교구성원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10년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교육 현장에 접목되지 못한 이유를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성찰적으로 밝히고 궁극적으로 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협력해야 할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신뢰 방안을 중심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II.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사회 일반은 교권에 대한 의미를 ‘교원의 권위’, ‘교원의 권한’, ‘교원의 권리’, ‘교육의 권위’ 등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어 통일되지 못하고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교권에 영향을 주는 ‘교육권’, ‘수업권’, ‘학습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권을 언급하는 의미로 각종 연구물에 기술되어 있다. 제도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개념에 대한 정의는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연구를 왜곡할 수 있어서 정립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학계에서는 성직자 또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권위, 인권, 교육권 등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가지 이상을 지칭하기도 한다.

법령에서 교권은 용어만 사용하고 있고 구체적 개념은 없다. 교원지위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이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행위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교권 개념이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 사회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불명확성이 있다. 교권 개념에 대한 교원, 학부모, 학생 간의 입장 차이도 클 것으로 짐작된다. 교육에 대한 철학 자체도 변화하고 있어 교권 개념은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권 침해 개념 대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한정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현재 ‘교권 보호’보다는 ‘교육활동 보호’, ‘교권 침해’보다는 ‘교육활동 침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일선 학교 현장에서 지침이 되는 매뉴얼의 명칭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로 명명되어 있다. 약칭인 「교원지위법」의 정식 명칭도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되어 있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9)은 「교원지위법」에서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로 규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권은 권의 주체인 교원에게는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일부에서는 교권을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교권 남용을 이유로 교권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중략) 교육활동은 모든 교육 주체가 향유

하는 공통의 이익이므로, 교육활동을 보호함에 있어서 교육 주체 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권 침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한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교육활동 중의 침해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육활동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상황은 쉽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되더라도 조례나 매뉴얼 등을 통해서서는 교권 침해 개념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권 침해 개념에 규범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진,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고 판단함으로써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사례들을 축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원지위법은 특별법이고 교원의 지위가 예우되어야 함에도 학교 안에서 존중을 받아야 하는 교원에게 균형 잡힌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학교폭력 등 학생 사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교원의 사기를 꺾는 법 규정이라 여겨진다. 아울러,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를 교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의 법 규정의 한계에 의해 교권의 개념을 확대할 수는 없지만,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관점과 동등한 인간적 대우를 위해서 ‘교권’ 개념이라는 규정을 사용하여 교원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을 지향한다. 1차적으로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겠지만, 2차적으로는 교원이라는 신분으로 시간과 공간의 구분 없이 최소한 재학생과 학부모에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할 것이다.¹⁾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은 교육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시·공간이 구별되어지기 힘든 특성이 있다. 그리고 신분 보장적인 규정을 강화하여 일명 ‘갑질’에 의한 교육활동 보호도 필요하다(신정기, 2011: 31).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등을 위한 기본적인 요청이라 여겨진다.

현재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와 사회 일반의 시각 차이는 크다. 법적인 보호는 교원과 사회가 원하는 범주보다 그 정의와 범주가 매우 협소하다. 향후 입법과정 속에 교권의 범주를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용어가 바뀌기 힘들다는 전제하에 ‘교권’의 개념에 맞는 현실적인 법 제정과 적용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사회학적인 개념²⁾인 교권이 법률 용어와 일치되고 그 안에 오해가 없도록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권 개념을 ‘교육자로서의 권리(교육권), 인간으로서의 권리(인권),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로 규정하고자 한다.

- 1) 김성기(2016)는 교권이 너무 좁게 해석되면 법적인 보호뿐인데, 이는 형식적인 보호뿐이고, 너무 넓게 해석하면 무엇이 교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규정하기 힘들다고 하여 법적인 권리와 교육전문가로서의 권위로 교권을 한정하였다(김성기, 2016: 5-6).
- 2) 최인화(2011)는 교권을 법학적 개념이 아닌 사회학적 개념으로 인식하였다(최인화, 2011: 440-441).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크게 교권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분석과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관한 자유기술식 문항 분석으로 구성된다. 설문조사 관련 연구 대상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교원 1,951명, 학생 3,074명, 학부모 2,869명으로 총 7,894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교원용 설문지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용 설문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학부모용 설문지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설문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응답자에 한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I 광역시 관내 전 기관에 설문 참여 홍보 공문을 발송하였고, e-가정통신안내문 및 SNS 홍보 게시물을 탑재하였다. 조사 방식은 온라인 방식이며, 조사 기간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약 2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한편, 교원, 학생, 학부모 공통 설문의 자유기술식 문항과 교원용 자유기술식 선택 문항에 대한 사례수는 다음과 같다. 학교구성원의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관한 생각을 다각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자유기술식 문항에 대해 교원은 총 1,951명 중 618명이, 학생은 총 3,074명 중 830명이, 학부모는 2,869명 중 728명이 문항에 의견을 서술하였으며, 학생의 경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511명의 응답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정소민 외(2022)의 설문조사도구 문항 중 특정 8개 문항과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관한 자유기술식 1개 문항이다. 교권 개념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김도기 외(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과 '2019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참고하여 교권 개념을 '교육자로서의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3개로 크게 설정하고, 각 3개의 개념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Likert 5점 척도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속한 집단의 공유된 가치나 문화 및 정서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구성원의 자발적인 공동체적 노력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I 교육청의 '202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에 따르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추진 목표로 삼고 있다. 학교 문화의 조성은 학교구성원의 공동체적인 노력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I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비전과 신념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교원에 대한

정서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은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은 대체로 공정하고 믿을 수 있다’, ‘교원은 교육자로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의 교육적 결정을 믿고 지지해야 한다’, ‘교원은 학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다.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Likert 5점 척도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마지막 문항은 내용상 응답치의 상수가 교원에 대한 낮은 신뢰를 의미하므로 역순으로 부호화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자유기술식 문항 분석 대상은 ‘교원의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관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설문 조사 참여자 중 성실하게 기술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교원은 총 1,951명 중 618명이, 학생은 총 3,074명 중 830명이, 학부모는 2,869명 중 728명이 문항에 의견을 서술하였으며, 학생의 경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511명의 응답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3. 분석 방법

교권 개념과 교원 정서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는 유효 데이터를 정제하고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2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설문 내용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3개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교권 개념 인식과 교원에 대한 정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1차로 제작된 예비 설문문항은 교육학 박사 3인, 교육전문직 4인, 현장 교원 2명의 문항 검토를 거쳐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되었으며, 현장 교사 10명,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약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한편, 자유기술식 문항에 대한 텍스트 분석은 질적자료 분석프로그램인 NVivo12를 사용하여 단어 빈도,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문항에 제시된 단어수를 분석하여 어떤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통해 단어의 빈도수에 비례하여 핵심어의 글자를 키워서 강조하는 시각화를 하였다. 또한 단어 빈도는 NVivo12의 word frequency query 기능을 활용하여 기중 백분율(weighted percentage) 0.20% 이상인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단, NVivo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포함한 구절을 단어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해당 분석은 탐색적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과 단어 빈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관한 의견 관련 자유기술식 응답에 한해 내용의 분석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응답 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도출된 의미 있고 대표성 있는 시사점을 범주별로 도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학교구성원의 교권 개념 인식 차이

학교구성원간에 교권 개념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원이 학생, 학부모에 비해 교권의 세 가지 개념 모두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에 있어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권을 교육자로서의 권리로 인식하는 평균값은 교원(M=4.14)이 학생(M=3.46)과 학부모(M=3.70)보다 더 높았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 모두 교권을 교육자로서의 권리로 보는 관점은 전체 평균(M=3.72) 이하로 나타났으나, 학부모가 교권을 교육자로서의 권리로 인식하는 평균값은 학생보다 더 높았다. 또한 교권을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이자 인간으로서의 권리로 보는 인식 역시 교원(M=4.71, 4.78)이 학생(M=4.25, 4.34)과 학부모(M=4.24, 4.34)보다 평균값이 더 높았다.

<표 1> 학교구성원간 교권 개념 인식 차이

교권 개념 유형	구분	개념 인식			F, p value/ 사후검정
		사례수	평균(M)	표준편차(SD)	
교사가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 (교육자로서의 권리)	교원a	1,951	4.14	0.991	257.771*** a>b,c c>b
	학생b	3,074	3.46	1.079	
	학부모c	2,869	3.70	0.983	
	전체	7,894	3.72	1.056	
교사의 신분보장, 지위 등 전문직 종사자로 존중받는 것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교원a	1,951	4.71	0.583	264.546*** a>b,c
	학생b	3,074	4.25	0.846	
	학부모c	2,869	4.24	0.762	
	전체	7,894	4.36	0.783	
교사라는 신분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받는 것 (인간으로서의 권리)	교원a	1,951	4.78	0.548	253.328*** a>b,c
	학생b	3,074	4.31	0.858	
	학부모c	2,869	4.34	0.784	
	전체	7,894	4.44	0.788	

***: p<.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교구성원간 교권 개념에 대한 인식에 다소 이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은 학생과 학부모에 비해 전체적으로 교권 개념을 넓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다소 협소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권 개념을 '교육자로서의 권리'로 보는 인식이 특히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교권을 단순히 교사로서의 권리

정도로만 인식할 뿐 자세히 알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간극은 교육활동(교권) 침해 상황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교구성원간 교권 개념에 대한 명확한 범주의 통일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학교구성원의 교원에 대한 정서 인식 차이

학교구성원 간 교원에 대한 정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래 <표 2>에서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구성원 간 교원에 대한 정서 인식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교원은 모든 문항에서 높은 평균으로 교원에 대한 정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의 교육적 결정을 믿고 지지해야 한다(M=4.55)’와 ‘교원은 학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M=4.56)’ 문항에서 교원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는 교원 스스로 긍정적인 교육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에 대한 정서 인식이 상대적으로 교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학부모는 ‘교원은 학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M=3.78)’ 항목에서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해당 항목에서 교원과 학부모 사이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의 교육적 결정을 믿고 지지해야 한다(M=3.93)’ 항목에서 교원과 학생 사이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낮은 신뢰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에 비해 동의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세 집단 모두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동의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문항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간의 유의한 평균값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학생은 학부모에 비해 동의하는 정도가 더 낮았다. 이는 학부모가 교원이나 학생에 비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아동학대의 연결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학교구성원간 교원에 대한 정서 인식 차이

문항	구분	개념 인식			F, p value/ 사후검정
		사례수	평균(M)	표준편차 (SD)	
교원의 교육활동은 대체로 공정하고 믿을 수 있다	교원a	1,951	4.24	0.736	279.118*** a>b,c b>c
	학생b	3,074	3.93	0.904	
	학부모c	2,869	3.64	0.830	
	전체	7,894	3.90	0.869	
교원은 교육자로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교원a	1,951	4.50	0.595	371.782*** a>b,c b>c
	학생b	3,074	4.15	0.832	
	학부모c	2,869	3.87	0.808	
	전체	7,894	4.13	0.808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의 교육적 결정을 믿고 지지해야 한다	교원a	1,951	4.55	0.579	397.137*** a>b,c c>b
	학생b	3,074	3.93	0.897	
	학부모c	2,869	4.01	0.741	
	전체	7,894	4.11	0.812	
교원은 학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교원a	1,951	4.56	0.593	515.133*** a>b,c b>c
	학생b	3,074	4.17	0.901	
	학부모c	2,869	3.78	0.862	
	전체	7,894	4.13	0.874	
교원의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역코딩)	교원a	1,951	3.74	1.243	64.12*** a>b,c b>c
	학생b	3,074	3.48	1.167	
	학부모c	2,869	3.36	1.058	
	전체	7,894	3.50	1.158	

***p<.001

3. 학교구성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관한 인식

가. 교원의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관한 자유기술식 응답 분석

(1) 단어빈도분석 결과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관한 자유기술식 응답을 통해 수집된 단어들의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분석된 단어는 총 1,000개의 단어로 수집되었고, 수집된 단어의 빈도수는 총 4,010개로 나타났다. 가중 백분율이 0.20% 이상인 단어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주요 키워드가 분포된 모습은 〈그림 1〉과 같다.

〈표 3〉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대한 자유기술식 응답 단어빈도분석 결과(교원)

번호	단어	횟수	비율(%)	번호	단어	횟수	비율(%)
1	교사의	58	0.61	15	교권을	25	0.26
2	생각합니다	57	0.60	16	교권보호를	24	0.25
3	합니다	52	0.54	17	학생들의	24	0.25
4	교사가	51	0.53	18	교권침해	23	0.24
5	학부모	44	0.46	19	있도록	23	0.24
6	교육활동	40	0.42	20	학부모의	23	0.24
7	있습니다	40	0.42	21	교육청	22	0.23
8	교권이	37	0.39	22	보호가	22	0.23
9	교사를	34	0.36	23	제대로	22	0.23
10	학생의	32	0.33	24	교육활동을	21	0.22
11	바랍니다	31	0.32	25	아니라	21	0.22
12	강력한	28	0.29	26	실질적인	20	0.21
13	필요합니다	28	0.29	27	필요함	19	0.20
14	좋겠습니다	27	0.28	총 단어 1000, 총 빈도수 4010 (3음절 이상)			



〈그림 1〉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관한 자유기술식 응답 워드클라우드 시각화(교원)

단어빈도분석에서 추출한 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추려 내어 최종적으로 5개의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는 ‘교사’, ‘생각합니다’, ‘학부모’, ‘교육활동’, ‘강력한’이다. 추출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텍스트검색(text search query)을 실시하여 해당 단어들이 사용된 맥락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핵심어 ‘교사’를 포함한 구절인 ‘교사의’와의 연계어를 살펴보면, ‘교권, 권리, 권위, 목소리를 들어 주세요, 손발을 묶어 놓고, 신념과 상황보다는, 심리적 정신적 건강회복, 인권, 지도에 불응하는, 직업에 대한 회의, 희생만 강요하는, 힘이 부족

한’ 등의 표현과 함께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와의 연계어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마음 놓고 교육을 할 수 있게, 보호 받을 수 있어야, 소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시달리지 않고, 아무런 힘이 없고,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가 지켜지도록, 이해해야 된다는 인식의 변화, 전문성을 가지고, 정당한 교육활동, 치유 받는 길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등의 구문과 나타났다.

한편, ‘생각합니다’에 선행하는 연계어로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문제라고, 강력한 법시행이 시급하다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교권 침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형식적이고 비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입법 청원해야 한다고,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교육청 도움이 필요하다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등의 표현 등이 나타났다. ‘학부모’와의 연계어로는 ‘교육이 필요하다, 민원, 연수 강화’ 등의 표현과 ‘학생’이 함께 언급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과의 연계어로는 ‘보호라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보호를 위하여, 보호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에도, 중에 일어나지 않을 경우, 중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동학대, 침해 상황을 주로 감내해야 하고, 침해에 대한 공론화 필요’ 등의 구문이 발견되었다. ‘강력한’의 연계어로는 주로 ‘교원지위법, 대책 마련, 규제, 법 시행, 법안 필요, 법제화, 조치, 조항, 처벌, 의지, 홍보’ 등이 나타났다.

(2) 시사점 추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교원의 자유기술식 응답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 총 6개 영역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1 교육활동(교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 2 교육청 단위의 교육활동(교권) 침해 사안 처리, 3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관한 사회의 인식 전환, 4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5 교원의 인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교권, 6 특수교사를 위한 교육활동(교권) 보호 강화’이다.

① 교육활동(교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

교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및 생활지도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현재 교원 지위법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협소한 범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대한 단위학교 및 개인 교사의 책임,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 강력한 처벌의 부재,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사안 처리 운영을 위한 의견으로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시 관련 업무 및 서류의 간소화, 교내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사안이더라도 관리자가 교육청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가해 학

생 즉각 분리, 가해 학부모에 대한 강제 조치, 정당한 교육적 행위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 관련 교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가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 및 특별 교육 의무화, 연계 심리치료기관의 확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기준 중 ‘조치없음’ 항목의 변경, 가해 학생 학급 이동, 교원지위법 적용 대상 중 시간강사의 포함 등의 제안이 있었다.

학생의 교권 침해에 대해 대응 수단이 거의 없으며 교권 침해 위원회를 열어도 그 과정 자체가 교사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며 결론도 학생 징계가 퇴하 아래의 결론이 대부분 나오므로 교사는 복귀 후에도 그 학생과 계속 마주치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

학생, 학부모들의 비속어 사용이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교원지위법 내용을 보니 피해당한 교원의 치료비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그 학생 및 학부모를 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의료비 청구를 하라니요.. 도대체 보호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교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교육청에서는 돌음터에 상담 신청하라고 교감 선생님께 전달하라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단위학교와 피해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나마 학교에서 도와주지 않는 경우 피해 교사가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는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피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원회, 조례 법률 등이 심각한 사안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교육활동에서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일은 교권 침해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고 교사가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시간강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등으로 시간 강사 선생님들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② 교육청 단위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교원들은 교육청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기관이 앞장서서 교권 보호에 대응하며 학교의 권위를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교육청 내 교권 보호 담당자 배치,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시스템, 교권보호위원회의 단위

학교 설치가 아닌 교육청 내 설치, 학부모의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효율적 대응 등이 지적되었다.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업무처리를 지시하는 형식이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를 더 무시하고, 작은 일에도 교육청, 청와대 등에 민원을 넣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으로 불평불만을 가지는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전화, 민원을 접수하면 허용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전문가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판단은 교육전문가의 판단이기에 학부모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및 장학사님들께서도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주셨으면 좋겠고, 교사가 서비스직이 아닌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③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관한 사회의 의식 전환

교권 침해는 사회 전반의 맥락들이 얽혀 이루어지는 복잡한 사회적 현상이다. 그렇기에 교원들은 교권 보호의 의미와 필요성을 사회 전반에 알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에서 교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방송을 자제하는 동시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고, 사회 구성원 전반의 동의와 상호존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관리자의 대처를 지적하며 관리자의 의식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 위주의 접근을 요구했다.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교권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에서 다각도로 노력해 주세요. 교사가 움직여 만들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현장에서 학생들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 행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여교사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해당 학교 관리자들의 인식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관리자가 있는 반면 그 상황만 모면하려는 관리자들도 많이 있음. 관리자들이 교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교권 침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이고 적극적인 교육과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함.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수업하면서 전문성을 보여주면 교권도 함께 올라가겠지요. 그럴 수 있도록 업무 경감부터 제대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학교, 성과를 위해 관리자가 교사를 압박하지 않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④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교원은 교육활동 중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었다. 교육활동(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이 조치를 하면 상대가 이에 대응해 아동학대로 신고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현했다. 교육활동(교권) 보호보다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것이 교원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라는 점에서 교육활동(교권) 침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범위를 좁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교원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될 경우 느낄 심리적인 압박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활동 중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동학대 사안으로 교육활동에 부담이 많다. 힘든데 바로 앉으라 했다... 발표하기 싫은 데 발표시켰다... 먹기 싫는데 급식지도 했다... 싸움을 통제했는데 우리 아이 억울하다고... 교권 침해는 더해가도 교사들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침해는 또 더 해 가고... 매일이 불안하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뭐만 하면 아동학대다, 학교 폭력라면서 교사들의 팔 다리를 다 잘라 아무것도 지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⑤ 교원의 인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교권

교권 보호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교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존중하는 길임을 언급하였다.

학급에 한 두 명의 학생 및 학부모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폭언으로 교사가 피해를 보고, 오롯이 혼자 감당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그 학급의 아무 잘못이 없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싶은 친구들을 방해해도 그 아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하지 마라”라는 말뿐이다.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권은 지켜져야 한다.

교사들도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자존감을 가지며 교육활동 할 수 있게 더욱 더 개선을 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동의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⑥ 특수교사를 위한 교육활동(교권) 보호 강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심의 기준 중 하나는 '침해 행위의 고의성'인데, 특수교육대상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학생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지적하였으며,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맞고, 굵히고 물리는 등 학생의 폭력이나, 학부모의 횡포나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서 보호될 만한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수학교에서도 학생들에 의해 교권 침해가 명백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는 특수학생의 인지 수준을 근거로 아이들이 몰라서 하는 일인데 왜 교권 침해로 생각 하나는 비난으로 2차 가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장애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권 침해 관련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 학생의 폭력을 장애가 있으니 교사가 이해해야 된다는 인식의 변화와 교사 보호 활동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됨.

나. 학생의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관한 자유기술식 응답 분석

(1) 단어빈도분석 결과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관한 자유기술식 응답을 통해 수집된 단어들의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분석된 단어는 총 1,001개의 단어로 수집되었고, 수집된 단어의 빈도수는 총 2,086개로 나타났다. 기중 백분율이 0.20% 이상인 단어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주요 키워드가 분포된 모습은 <그림 2>와 같다.

〈표 4〉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대한 자유기술식 응답 단어빈도분석 결과(학생)

번호	단어	횟수	비율(%)	번호	단어	횟수	비율(%)
1	교권을	47	1.20	23	필요하다	12	0.31
2	좋겠다	42	1.07	24	필요하다고	12	0.31
3	생각한다	31	0.79	25	교권보호는	10	0.26
4	교권이	29	0.74	26	교권보호에	10	0.26
5	학생들이	25	0.64	27	선생님과	10	0.26
6	선생님들이	24	0.61	28	침해하지	10	0.26
7	교육활동	18	0.46	29	학생을	10	0.26
8	화이팅	18	0.46	30	학생의	10	0.26
9	교육을	17	0.43	31	힘내세요	10	0.26
10	보호는	17	0.43	32	감사합니다	9	0.23
11	교권은	16	0.41	33	보호를	9	0.23
12	선생님들	16	0.41	34	선생님들께	9	0.23
13	선생님들을	16	0.41	35	좋겠어요	9	0.23
14	선생님들의	16	0.41	36	교권침해를	8	0.20
15	선생님이	16	0.41	37	교육이	8	0.20
16	학생들에게	16	0.41	38	교육활동을	8	0.20
17	선생님도	15	0.38	39	권리를	8	0.20
18	선생님의	15	0.38	40	선생님께	8	0.20
19	선생님을	14	0.36	41	선생님들도	8	0.20
20	학생들을	14	0.36	42	자세히	8	0.20
21	선생님	13	0.33	43	학생들의	8	0.20
22	수업을	13	0.33	총 단어 1,000, 총 빈도수 2,086 (3음절 이상)			



〈그림 2〉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관한 자유기술식 응답 워드클라우드 시각화(학생)

단어빈도분석에서 추출한 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추려 내어 최종적으로 6개의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는 ‘생각합니다’, ‘좋겠다’, ‘화이팅’, ‘교육’, ‘교권’이다. 추출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텍스트 검색(text search query)을 실시하여 해당 단어들에 사용된 맥락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각합니다’와의 연계어를 단어나무로 도식화하여 살펴본 결과, 선행어로 ‘법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차별이 아닌 예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교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옳다고’ 등의 구절이 등장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좋겠다’와의 연계어를 살펴본 결과, 해당 단어의 선행어로 ‘강화되었으면, 이루어졌으면, 강해졌으면, 지켜지면, 잘 됐으면, (교육이) 많아지면, (법이) 생겼으면, 보장되었으면, 았았으면, 보호되면, 지켜졌으면, 마련됐으면, 알려주면’ 등의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과 교육 및 법의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이 발견되었다. 더불어 ‘악용하지만 았으면, 학생들을 역으로 억압하는 일은 없었으면’ 등의 우려의 의견도 소수 나타났다.

다음으로 ‘화이팅’의 경우 단일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외에 <표 4>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등의 문장처럼 교원을 응원하는 의견이 높은 빈도로 발견되었다. 또한 ‘교육’에 관한 연계어로는 ‘필요하다, 많아지다’ 등의 단어가 발견되었으며, 일부 응답자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교권’을 포함한 구절 중 ‘교권을’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해당 표현과의 연계어로는 ‘지켜 주세요, 지키자, 지킴시다, 보호하면, 보호하자, 보호해서,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자,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침해하지 말자, 침해하면 안 된다, 침해하지 않도록’ 등과 같이 주로 ‘지키다, 보호하다, 강화하다, 침해하지 않다’ 등의 표현과 연계되는 경향을 보였다.

(2) 시사점 추출

학생의 자유기술식 응답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 총 5개 영역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1 교육활동(교권) 보호 관련 설문조사의 교육적 효과, 2 교육활동(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 교육의 강화, 3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교권) 보호 제도의 운영, 4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 5 교원의 자기 성찰 요구’이다.

① 교육활동(교권) 보호 관련 설문 조사의 교육적 효과

본 설문은 ‘교원지위법’ 관련 법의식을 조사 영역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영역의 문항을 제시함에 있어 ‘교원지위법’의 세부 내용 중 일부를 설문에 제공하였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심각성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묘사한 비네트 문항, 학교교

권보호위원회의 설치 여부 인지에 대한 문항 등을 제시하였다. 학생 중 일부는 설문 조사를 통해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교권 보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응답을 하였다.

내가 자주 했던 행동이 교권 침해인지 몰랐다. 이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로 조심해야 할 거 같고 교권 보호가 선생님들을 위해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선생님께 놀자고 하는 행동도 교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몰랐는데,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이걸 통해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더 자세히 교권보호위원회를 알았다.

이 설문 조사를 하며 교권 보호에 좀 더 자세히 알게 됐고 혹시나 내가 모르게 교권 침해를 할 수도 있으니 잘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② 교육활동(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 교육의 강화

학생 응답 분석 결과,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충분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친구들이 선생님이 안보는 장소에서 선생님의 이름을 존댓말로 안 부르고 친구 대하듯이 욕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 교권에 대하여 교육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우리 반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를 받고 계신 것 같고,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문제아들은 안 들을 듯.

지속해서 교육을 해주어 학생들이 보다 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교권) 보호 제도의 운영

교원지위법의 낮은 실효성으로 인해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적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에 대한 적절한 법 적용을 강조하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법이 있고 제도만 있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규제를 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교원지위법’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 측에서 크게 반발하거나 항의하면 학교에서는 교권 보호는커녕 학교의 명예 실추가 우려돼 사건을 어영부영 마무리시키는 경우가 많던데, 눈에 보이는 법이 있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선생님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와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도 악한 침해 사례는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내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조치를 한 사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교원지위법이 더 잘 적용되고, 교원지위법에 대해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보호하는 교원은 보호하지 못하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학생은 역으로 날뛰는데 이게 정녕 교원과 학생의 학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맞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④ 상호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

학생들은 교권 보호는 단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습할 권리를 가진 학생을 보호하는 것과는 관련이 있으므로 처벌보다는 예방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함양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냥 학생들이 적극적인 선생님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에게 상처 주고 비교하는 말 안 하면 좋겠네요. 그저 학생과 선생님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학업이 되길.

자는 학생을 깨우시는 선생님께 계속 막말을 하고 수업을 방해하며 수업 시간을 낭비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거나 교육부 또는 학교에서 처벌을 하는 등 선생님들의 교권도 보호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 시간도 보장해주세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가 하면 수업시간 중 도를 지나치게 넘는 장난이나 수업 방해가 심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제대로 이 문제를 처벌이 아닌 예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⑤ 교원의 자기 성찰 요구

일부 학생들은 교원지위법의 악용을 염려하거나 교원의 부적절한 대우에 대한 지적을 하며 교원의 성찰을 요구하였다.

교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교권 보호를 전제로 선생님이 자신의 감정을 학생들에게 표출하는 경우도 엄청 많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중략)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에게 막 대하는 선생님들을 보고 막 대드는 학생들이 나타났다고 학생 입장에서 써 봅니다. 그리고 교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학생 인권 좀 생각해 주세요.

대부분의 선생님과 학생들을 위하여 교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권 악화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있는 만큼, 교권을 악용하는 자격 없는 선생님도 있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할 수 있는 선생님을 학생들이 더 느끼고 교내생활로 충분히 알고 있으니 학생 탓보다는 선생님들 어른들이 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진짜 일 년을 우울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학생이 잘못을 안 했는데 교사가 교권 보호를 역으로 나쁘게 활용하여 학생을 잘못된 학생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교권 보호법이 너무 지나치게 교사에게 유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 학부모의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관한 자유기술식 응답 분석

(1) 단어빈도분석 결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자유기술식 응답을 통해 수집된 단어들의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분석된 단어는 총 1,000개의 단어로 수집되었고, 수집된 단어의 빈도수는 총 5,732개로 나타났다. 가중 백분율이 0.20% 이상인 단어에 대한 결과는 <표 5>과 같으며, 주요 키워드가 분포된 모습은 <그림 3>과 같다.

〈표 5〉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대한 자유기술식 응답 단어빈도분석 결과(학부모)

번호	단어	횟수	비율(%)	번호	단어	횟수	비율(%)
1	생각합니다	185	1.39	17	학생들의	40	0.30
2	교권이	87	0.65	18	필요하다고	39	0.29
3	합니다	69	0.52	19	있습니다	38	0.29
4	아이들을	68	0.51	20	같습니다	36	0.27
5	교권을	61	0.46	21	선생님들	36	0.27
6	아이들의	60	0.45	22	교육이	31	0.23
7	교사의	59	0.44	23	필요합니다	31	0.23
8	선생님들의	57	0.43	24	선생님들도	29	0.22
9	한다고	55	0.41	25	선생님이	29	0.22
10	바랍니다	49	0.37	26	봅니다	28	0.21
11	선생님	46	0.35	27	선생님을	28	0.21
12	좋겠습니다	46	0.35	28	하지만	28	0.21
13	교권은	45	0.34	29	교사가	27	0.20
14	아이들이	45	0.34	30	아이들에게	27	0.20
15	선생님의	41	0.31	총 단어 1000, 총 빈도수 5732 (3음절 이상)			
16	학생의	41	0.31				



〈그림 3〉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대한 자유기술식 응답 워드클라우드 도식화(학부모)

단어빈도분석에서 추출한 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추려 내어 최종적으로 5개의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는 ‘생각합니다’, ‘교권’, ‘아이들’, ‘선생님’, ‘하지만’이다. 추출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텍스트검색(text search query)을 실시하여 해당 단어들이 사용된 맥락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각합니다’와의 연계어를 단어나무로 도식화하여 살펴본 결과, 선행어로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학부모 교육이 절실하다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교사의 자질과 인성 또한 중요하다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력한 정책과 실현이 필요하다고,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등을 발견할 수 있다. ‘교권’을 포함한 구절 중 ‘교권이’와 ‘교권의’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교권이’에 후행하는 연계어로는 ‘강화되기를, 남용되지 않는, 무너졌다고, 떨어졌다고, 바닥으로, 바로 서야, 보장되어야, 보호되어야, 있어야, 중요한 만큼’ 등이 있었다. 이는 교권 추락의 심각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과 교권 보호 및 강화를 바라는 동시에 교권이 남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드러낸다. 또한 ‘교권을’에 후행하는 연계어로는 ‘보호하다, 빌미로, 앞세워, 살리다, 주장하려면, 지키다, 침해하는, 바로 세우는’ 등이 나타났다. 특히 ‘보호하다’와 관련하여,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교육에 최선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법적제재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우선되어야, 보호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등과 같이 교권 보호를 둘러싼 학부모의 우려가 담긴 의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이들’을 포함한 구절 중, 높은 빈도를 차지한 ‘아이들을’과 ‘아이들의’의 연계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이들을’에 후행하는 표현으로는 ‘교육할 수 있어야, 내 아이처럼, 대해주면, 사랑으로, 위해, 존중하는 모습, 존중하는 자세, 지도하고 사랑하는 모습, 지도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차별 없이, 포기하지 말고’ 등의 표현이 있었으며, ‘아이들의’에 후행하는 표현으로는 ‘눈으로, 미래에, 상처는, 의견을, 인권도, 인권이, 인성교육이, 학습권’ 등의 표현 등이 있었다.

‘선생님’을 포함한 구절 중, 높은 빈도를 차지한 ‘선생님들의’의 연계어로는 ‘교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은 보장되어야,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게는, 교권이 보호되어야, 의식 변화가 있기를, 자질, 인권’ 등이 나타났다. ‘선생님들의’ 연계어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고에, 힘내세요’ 등의 격려의 표현이 발견되었다.

접속어 ‘하지만’의 선행절과 후행절을 살펴본 결과, 선행절에 나타난 표현으로는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찬성합니다, 당연합니다, 힘드실 것 같습니다, 법의 힘이 필요하기도’ 등이, 후행절에는 ‘교권을 내세워, 교사도 아이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그것만을 내세워 아이들의 인권이나, 교원의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교사를 위한 법, 인성이 부족한 선생님, 현장에서 그 법률이 활용이 되는지가’ 등이 나타났다.

(2) 시사점 추출

학부모의 자유기술식 응답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 총 5개 영역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1 교권 강화 필요, 2 교원의 자질과 교권 간의 관계, 3 교육활동(교권) 보호 관련 학부모 교육의 강화, 4 인권으로서의 교권 강조, 5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이다.

① 교권 강화 필요

학부모들은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와 교권 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심리상담과 학교폭력에 관한 별도 인력 배치, 청원경찰 채용, 가해 학생 분리 조치 시 해당 학생 지도 인력 확보, 가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점차적인 제재 방안 마련 등을 언급하였다.

학부모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 이미지 때문에 쉬쉬 하고 넘기는 곳도 있고 오히려 처벌을 훈장처럼 여기며 주변 친구들에게 무용담처럼 자랑 삼아 얘기하고 며칠 쉬다 오면 끝이라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만만한 대상으로 여기는 선생님의 권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현 학생들에게 맞는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학교에서도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을 교사가 바로잡기 위해 교정하려 가르치려하면 이내 학폭이라고 반발하며 들고 일어섭니다. (중략) 어떤 학급은 수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며 이는 아이들의 교육에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다방면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이오니, 교사의 권리 및 보호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학부모이자 교권침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문지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많지요. 늘 신문고에 질의할 때도 교권위상을 올려달라고 올렸습니다.

추락한 교권에 선생님들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적절한 조치보다 무조건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실제로 초3 아이들의 유행어로 “너 그러다가 연락 당한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교권에 힘이 있어야 교사의 책임감이 높아진다고 동의합니다. 교권 침해 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② 교원의 자질과 교권 간의 관계

학부모들은 교권 강화의 필요성과 법적인 제도의 마련을 동의하면서도 '교권의 남용'을 우

려하였으며, 교원의 '전문성', '자질' 및 '인성'이 기본 전제로 있어야 교권 보호가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교권 보호를 주장하기 이전에 교원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교원이 '직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인'같은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은 누군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스스로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존경의 마음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선생님들의 인권 보장도 중요합니다. 노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교사의 교권 보호가 학생의 교육활동 보장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사의 전문성 미달에 대한 조치를 갖추십시오.

교권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선생님들도 다양각색이죠. 아이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하는 선생님들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권리에 대하여 법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인성이 부족한 선생님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교사의 마음가짐과 책임감이 없이 그저 직장인 같은 마인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교권을 침해 당했다 여기면서 그 전에 아이들에게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교육하지 못 한 결과가 아닐까...

부모들은 교사분들에게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러실까 싶다가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 없이 기계적으로 대하거나 애정이나 존중보다는 통제에 집중하는 교사들을 보거나 모든 면에서 나태한 교사들을 볼 때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막상 일이 터지면 강하게 나가야 내 아이가 지켜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런 교사들에 대한 제재나 피드백 없이 교권을 위한 시스템만 만들어지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우리도 교사분들을 존중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를 원합니다.

③ 교육활동(교권) 보호 관련 학부모 교육의 강화

학부모들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부모들이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책임 역시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부모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도 소중하다는 인식 전환, 훈육과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교

권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타심 없이 제 자식만 소중히 여기는 생각 없는 부모들이 문제니까요. 그런 부모들이 양육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교권을 생각할 리가 만무하죠. 따라서 학부모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인권을 법으로 규정해 의무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는 의도하지 않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심각한 거 같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의무교육으로 교권 보호 기준의 설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훈육의 개념을 너무 학대로 비추지 않게 사례 등을 교육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내 설치가 되어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학부모도 많으시고 요즘 일부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만 소중하다는 인식을 바꿔줄 교육을 위원회로 구성된 분들뿐 아니라 각 학교 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④ 인권으로서의 교권 강조

일부 응답자는 교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으며, 학생의 인권에 비해 보호받지 못하는 교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교권과 인권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의견도 일부 발견되어 추후 보다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교사라는 직위보다 인간으로써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법령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동의 인권은 매우 중요하고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교원의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러한 교사들에 대한 학생의 인격적 모독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사람이고 교육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존중과 존경을 표현할 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본인의 인권을 주장할 때 선생님도 인권이 있음을 같이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⑤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

학부모들은 '상호 존중'의 문화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먼저, 교원이 학생을 존중하고 전문성과 적절한 자질을 갖추어야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교원을 존중하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학생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학생들이 교원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교원과 학생 및 학부모 서로가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으로만 해결하려고하기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참스승의 모습을 보여주며 학생과 교사 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존중과 배려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학생은 서로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신뢰가 생길 것이고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당연히 선생님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학생들도 또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믿고 의지하고 지지해주는 열정적이고 지혜로운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호과정이 있다면 교권 또한 저절로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동지였으면 한다. 차별도 없고, 정서나 언어적으로도 폭력이 없고, 교사는 교사답게 학부모는 학부모답게, 학부모끼리의 정도의 선과 도리를 지키며,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또한 도리와 정도를 지키며 각지 사명감을 되새기는 교육이나 훈련이 더 필요할 듯하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권 개념에 대한 인식에서 교육자의 수업할 권리보다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로 보는 관점이 더 우세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원지위법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앞세움으로써, 교권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의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교권이라는 용어가 사회학적인 의미를 갖는 한, 교원지위법에 내재된 작동 원리 중 하나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가 아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교권을 교육활동으로 치환하였다. 일반적으로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대

상이 사회에서 유의미한 관념이나 가치관 혹은 인간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라고 본다면, 교육 활동은 교원의 존재론적 본질과 직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교원지위법을 통해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학생과 학부모가 수업결정권으로서의 교권보다는 인권 및 전문직의 권리 측면에서의 교권 개념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점은 이들이 교권을 떠올릴 때 교원의 수업결정권이 발휘되는 행위인 교육활동과 그 교육활동이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행위를 하는 교원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권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에 맞추어 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법 제정에 따라 교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편, 학교구성원간 교원에 대한 정서 인식 차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교원은 모든 문항에서 높은 평균을 보여 교원으로서 교육활동의 공정성, 교육자로서의 전문성, 학생을 위한 노력에 있어 긍정적인 교육자적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의 교육적 결정을 믿고 지지해야 한다(M=4.55)’와 ‘교원은 학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M=4.56)’ 문항에서 교원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지지를 높은 수준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스스로 교육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에 대한 정서 인식이 상대적으로 교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학부모는 ‘교원은 학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M=3.78)’ 항목에서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해당 항목에서 교원과 학부모 사이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의 교육적 결정을 믿고 지지해야 한다(M=3.93)’ 항목에서 교원과 학생 사이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교구성원간 교원에 대한 정서 인식의 간극을 고려할 때, 교원은 교육활동의 공정성, 교육적 전문성, 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의 내실화를 모색할 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 역시 학교와 교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부모와 학생의 자유기술식 문항에서 드러나는 특이한 점은 교권 보호 자체에 대한 의견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먼저, 교권을 인권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이들은 교원 역시 인간이기에 존중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교권 보호’가 성립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은 교원의 전문성과 바람직한 인성, 즉 교원의 교육자로서의 자질이라고 보는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교권 침해는 교원이 전문성 및 인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며, 교권을 주장하기 전에 교원의 자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는 교원의 자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육활동의 보호’가 반드시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학부모의 자유기술식 응답 중 특히 이러한 관점을 피력하는 의견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점, 학부모가 교원에 대한 정서 관련 문항에서 학생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인다는 등의 결과를 종합할 때,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속에서 교원의 교육적 전문성 및 직업적 사명감 부족은 ‘교권 침해’에 대한 일종의 정당화 이유, 혹은 ‘교권 침해’를 유발하게 되는 전제적 조건으로 인식되며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공동체적 협의를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을 모른 척하기보다 그것을 시작으로 대화의 장을 열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이러한 비판은 교원 집단 내부의 성찰적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해석학적 관점에서 인간 경험 자체는 언어 속에서, 언어를 통해 일어난다. 마치 거울이 대상의 상을 되비치는 것처럼 언어는 본질적으로 ‘사변적 구조’(Gadamer, 1975; 최명선, 2005 재인용)를 갖는다. 언어가 스스로 상을 되던져 줌으로써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식을 사변적인 것이라고 일컬을 수 있으며, “말해진 것(the said)”은 그 자체로 진실을 가지지 않으며 “말해지지 않는 것(the unsaid)”을 가리킨다(Gadamer, 1975; 최명선, 2005 재인용). 그렇기에 우리는 “표면에 나타난 것에만 우리의 이해를 고정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말해진 것의 뒤로 돌아가서 아직 말해지지 않고 있는 것의 의미를 들으려고 해야 한다”(최명선, 2005: 80). ‘교육활동(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사고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말해지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원의 자질 및 인성이 ‘교육활동(교권) 침해’에 대한 정당화 근거 혹은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인식에 내재된 의미를 고찰해 본다면, 적절한 인성이나 자질을 갖춘 교원일 경우에만 ‘폭력으로 망가지지 않게 보살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애도가치 분배에서의 차별’(Butler, 2021)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디스 버틀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비폭력의 윤리학이 삶의 가치에서의 평등을 전제하고 긍정하고자 한다면, 애도가치 분배에서의 차별을 문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보자면 애도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사실은,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명체가 불평등 구조 내부에서 차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줄 프레임이 될 수 있다. 평등이 형식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인간으로 인정받는 인간,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누구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Butler, 2021: 81).

위의 주장에 빚대어 보자면, 우리는 ‘교육활동(교권) 침해’라는 현상을 인식함에 있어 모종

의 차별적 가정(‘교육활동(교권) 침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애도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선생님’이라는 범주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타인으로 인해 고통 받기 때문에 ‘애도 대상이 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애도가치 분배에서의 불평등이 폭력과 비폭력에 관한 우리의 의식적 사고방식에 어떻게 개입하고 이를 어떻게 왜곡하는가”(Butler, 2021: 82)라는 버틀러의 질문은 ‘교육활동(교권) 침해’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유의미하게 다가온다.

우리 삶에 존재하는 상이한 개념의 틀과 삶의 형식은 상호인정과 존중,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를 전제로 공존해야 한다. 상대가 ‘선생님’으로서 부족한 자질이나 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그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방식이 상대를 훼손하는 폭력의 형태라는 사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는 소통 가능한 공감적 주체로서의 타자가 아닌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힘의 우세를 이용한 객체로서의 타자에 대한 지배일 뿐이다.

더 나아가 문화적 의미체계가 개인의 의미구성 행위의 조건이며 개인의 사유방식과 믿음 체계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인식을 단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로 봐야 한다. 교육활동(교권) 침해 사건은 선정적인 이야기로 보도될 때가 많다. 보도 이후에 사회적 충격을 가져오지만 그뿐이고, 또 다른 사건이 다시 발생한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가해 요소들이 잠재해 있는 삶 속에서의 삶은 간신히 버티는 삶이다(Butler, 2021: 238).” 본 연구에 참여한 교원들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자유기술식 문항 및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청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로 많이 언급한 ‘민원이 우선시되는 분위기’는 결국 우리 사회가 다양한 유형의 교육활동(교권) 침해 행위의 폭력성을 ‘민원’이라는 이름에 용인하고 허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화적 의미체계는 개인의 의미구성 행위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폭력을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합법적 거부 속에서 생겨나는 폭력성”(Butler, 2021: 239) 역시 우리는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지 않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폭력뿐 아니라 교사를 향한 폭력 역시 진지하게 성찰되어야 하고, 그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사고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대안적인 패러다임의 모색이 요구된다.

2. 제언

우리 교육은 입시 및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교육의 가장 기본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비교육적이고 비인권적인 행태를 용인하였다. 폭력을 정당화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상실감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 폭력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진정한 가치가 학교와 교실

현장에서 교육구성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순히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기존 학교 질서를 헤치는 요인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학교 현장의 생태계가 어떻게 잘못 구성이 되었고, 훼손되었는지를 원인과 결과에 입각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인권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중견 교원들이 인권적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은 초임 교원에 대해 어떤 교육적 방향을 안내할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인권이 배움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이전에 기본적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구현되어야 양질의 교육이 학생에게 투영될 수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양적 교육을 벗어나 질적 교육을 요구하는 사회의 기대와 가정과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학교에서 해결되도록 한 지금의 시스템을 성찰하면서 교육의 새로운 가치 질서의 정립이 요구된다.

인공지능(AI)이 학교와 교원의 전문성을 위협하고, 코로나19에는 안전을 위해 비대면 교육이 진행되면서 학교 무용론과 교원의 역할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학교구성원의 교육활동(교권) 보호 인식은 각 구성원들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여 배움이 인권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요구한다. 기후환경의 이상이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자연이 심각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한 과거와 현재 세대의 산물이라면 우리 교육의 이런 결과도 오랜 기간 학교폭력, 자살, 사회적 낙오 등을 거치면서 이제는 배움의 공간과 주체인 학교와 교원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연의 환경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의 교육 생태계도 패러다임을 견고하게 다질 시간이 지금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및 보도자료(2012.8.28.).
- 교육부(2022).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2022.12.27.).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교육활동침해 예방 교육자료(교원용).
- 권오형(2010).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폭력경험과 정신건강 및 소진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도기 외(2019). 교권침해실태분석 및 교권보호방안 연구. 전문기관 위탁연구 2019-31. 강원도교육연구원.
- 김성기(2016). 교원지위법의 쟁점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28(4), pp.1-22.
- 김성기 외(2017). 「교권 바르게 찾아가기」. 서울: 가람문화사.
- 김희정·박은정·김현정(2021). 학생·학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교사의 심리적 어려움과 상담에 대한 기대에 관한 질적 연구. 『교사교육연구』, 60(4), pp.545-570.
- 박경애·조현주(2015). 교사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의한 교권침해 실태와 대처과정 연구. 『한국교원연구』, 32(2), pp.93-122.
- 박애리(2021.2.5.). 가벼운 장난도 ‘학교폭력’…피해자 감정이 판단기준. 데일리굿뉴스.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058>.
- 신정기(2011).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 『사학』, pp.28-35.
- 신진욱(2004). 근대와 폭력: 다원적 복합성과 역사적 불확정성의 사회이론. 『한국사회학』, 38(4), pp.1-31.
- 오대연·김경보(2016). 초등교사의 폭력피해 외상경험과 스트레스반응의 관계-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변인으로. 『초등상담연구』, 15(3), pp.213-231.
- 윤이화(2022).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3(2), pp.129-151.
- 이규미·손강숙(2013). 폭력피해교사의 심리사회적 후유증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pp.159-178.
- 이규미·조은선(2015). 교사의 폭력피해경험과 후유증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pp.1001-1022.
- 이승연·정진솔·오인수·신태섭(2022). 교사의 폭력피해 경험, 자신감, 소진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7), pp.249-274.
- 인천광역시교육청(2022). 2018~2022(8.31.)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현황. 내부자료.
- 정소민 외(2022). 학교구성원의 교육활동(교권) 보호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천교육

- 2022-0220.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교육정책연구소
- 조규영 · 김수희(2019).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폭력피해 경험, 소진 및 외상 후 성장. 『수산해양교육연구』, 31(3), pp.925-937.
- 조기성(2019). 교원의 개념과 보호방안 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기성 · 정상우(2016). 교권의 개념과 침해 구제방안. 『교육문화연구』, 22(6), pp.33-57.
- 최명선(2005). 「해석학과 교육-교육과정사회학 탐구-」. 교육과학사.
- 최유리 · 서영석(2022). 교사의 폭력피해경험과 소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 pp.789-804.
- 최인화(2011). 교원의 교육권 보장과 그 한계. 『미국헌법연구』, 22(3), pp.433-462.
- Butler, J.(2021). 「비폭력의 힘」 (김정아 역). 문학동네. (Original work published 2020).
- Chen, J. K., & Astor, R. A.(2008). Students' reports of violence against teachers in Taiwanese schools. 『Journal of School violence』, 8(1), pp.2-17.
- Moon, B., & McCluskey, J.(2022). Aggression toward Teachers and Negative Consequences: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cedural Justice. 『Victims & Offenders』, pp.1-16.
- Wilson, C. M., Douglas, K. S., & Lyon, D. R.(2011). Violence against teachers: Prevalence and consequenc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2), pp.2353-2371.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Educational Authority) Protection Among School Members

Chung, So Min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Cho, Ki Seong (Incheon Haneul Academ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1,951 teachers, 3,074 students, and 2,869 parents in the I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in conceptual awareness and feelings toward teachers between the group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In addition, responses to open-ended questions about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were analyzed for word frequency and word clouds using Nvivo12, and implications for each group of school members were drawn by category.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in schools, this study focuses on the realistic voices of school members surrounding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based on the analysis of an open-ended question.

As a result, the study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ool members' perceptions of the concept of school rights and their feelings toward teachers, as well as parents' and students' perceptions of the prerequisite conditions that lead to "school rights violations" when teachers do not have adequate professionalism and character in the process of violating educational activities. These results show that teachers should try to internalize fairness in educational activities, pedagogical expertise and educational support for students, and students and parents should make mutual efforts to restore trust in schools and teachers, and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flection within the teacher group.

Despite this, considering the fact that our society has allowed the inherent violence in various forms of educational infringements (abuse of educational authority) under the name of 'complaints,' there is a need to explore alternatives that expand the horizon of reflection among school members who do not tolerate any form of violence and that enhance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educational authority). Just as climate change has demanded the restoration of the environmental ecosystem, the educational ecosystem also requires trustworthy approaches among educational constituents.

* Key words: Educational authority, student human rights,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school members, violence